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27,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벨기에: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규정 개정

벨기에 의회는 2023 년 12 월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2023 년 12 월 31 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주요 개정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요 규정

-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그룹은 벨기에 현지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벨기에 상업 등기부(Belgian Commercial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유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에 대한 추가 서식 제출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계산

- 자격 환급 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QRTC")의 정의에 시장성 양도가능세액공제의 정의를 포함하였습니다.
-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 주식(지분 10% 미만)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배당금을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및 손실에 포함시키는 선택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관할권의 추가세액에서 소재국 추가세액(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의 공제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대체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 세액공제 관련 이연법인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혼합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세제(예를 들어, 해외회사 무형자산 저율과세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에 대한 전환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적용면제(Safe harbour)

- 자격 소재국 추가세 과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의 영구적 적용면제 규정과 중대하지 않은 구성기업에 대한 영구적 적용면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UTPR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별보고서 기준 전환기 적용면제의 혼성 차익거래 규정(Hybrid-arbitrage rules)을 포함하였습니다.

## 수정 사항

- 부분소유중간모기업(Partially Owned Parent Entities, "POPE")에 관한 과세 조항 문구를 국제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전환기 연도의 정의 및 국제 활동 초기 단계에서의 예외 규정에 대한 문구를 국제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노르웨이: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노르웨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추가 개정 세법(Supplementary Tax Act)에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재무부(The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는 2023년 6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시행에 관한 공식 협의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은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그룹에 대한 중대한 보고 의무를 수반하며, 최초 신고 기한(2024 년 소득 연도)은 2026 년 6 월(즉, 최종 모기업의 첫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 개월)입니다. 2025 및 이후 소득 연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 개월입니다.

- 본 규정에는 QDMTT와 IIR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향후 UTPR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본 규정은 소득 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및 노르웨이 그룹(고정사업장 포함)에 속한 기업, 사업체, 협회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 포함되는 세금에는 소득, 천연자원, 토지 임대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 본 규정으로부터 제외되는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 국제기구 및 비영리 기구, 연금 펀드와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7억 5천만 유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에는 제외기업의 소득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규정은 일시적 및 영구적 적용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인 7168 (2024.04.16)

제목: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기타 거래처들에 비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성 소액거래처이며, 쟁점자회사 및 AAA에 대한 매출품목이 상이한 점, BBB는 오픈마켓이라는 점에 따라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경정)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투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AAA(이하 "쟁점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해서 무선이어폰 등의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이를 CCC(주) 등에 납품하는 ODM방식의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쟁점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할 때는 매입채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는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거래 형태로 계속사업 중이다.
-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2.8.23 ~ 2022.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적수에 정상이자율(4.6%)을 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산정 및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202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각각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쟁점

-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의 생산을 담당하는 유일한 쟁점자회사가 시설투자 및 시험생산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쟁점자회사의 재무 상황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인정이자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li> <li>-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것이므로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중략)... 조세심판원도 국외특수관계자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조심 2009중2974, 2010.10.19. 참조), 과세관청의 행정해석도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을 연장해준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인 46012-1775, 1998.7.2). 따라서 쟁점자회사의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 현지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하는 영업상 전략일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쟁점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li> <li>-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거래조건에 맞게 즉시 결제하는 반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거래조건(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해 지연회수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대금은 평균 20~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정상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이자는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자회사 이외의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들로부터는 매출대금을 지연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자회사도 청구법인 외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평균 50일 이내에 매입대금을 결제한 반면,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만 정상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li> <li>-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신제품 생산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해외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략)... 쟁점자회사는 이 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비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큰 증가가 없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출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20~30일 내에</li> </ul>

위한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없다.

- ...(중략)... 조세심판원은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조심 2016 중2322,  
2017.1.2. 등 다수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금지급 이내에 미회수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채권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게  
부품을 수출하고 쟁점자회사는 이를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당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상업채권으로서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법인과 의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전문 생산기지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채권의 실재성 및 완전성은  
매년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인증되고  
있다.

- 쟁점매출채권은 애초에 금전대차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쟁점자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해  
회수가 지연된 것일 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나 계약이 없었다. ...(중략)...  
쟁점매출채권 회수지연 누적금액이 증가한  
시기는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감소 및  
경영 악화 시기와 일치한다.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고의로 지연회수하는  
것을 용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 채권의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거래처는 CCC와  
DDD을 제외하면 모두 소액거래처이므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중략)... 또한, 오픈마켓인 DDD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업로드하고  
소비자가 이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회수하고 있는 반면, 매입채무를 제외한 부채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투자증가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초기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은 통상적으로 자본금 또는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

-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주만  
받아 운영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하며 회수가능성이 높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채권·채무의 상계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민법」제492조,  
제493조)로 성립하는 것이고, 「외국환거래법」도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상계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처벌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은 정상  
결제일에 지급하고 외상 매출금은 지연회수하고  
있고, 채권·채무 상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공급한  
부품대금과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대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수입대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확보도  
없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금전대차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자금지원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보다는  
원재료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는데, 그러한 경우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간  
재화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이는  
별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국조법 시행령 제11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  
자회사에게 유상사급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은  
통상적인 결제조건에 맞게 지급하면서 원자재  
수출대금은 통상적인 결제일에 비하여 현저히  
지연회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DDD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므로 조사청이 오픈마켓 매출대금의 회수기간과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한편, 쟁점자회사가 생산을 전담하는 법인이라면 CCC㈜는 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유일한 매출처이다. 청구법인은 CCC㈜가 위중한 자금사정으로 당사의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금 회수지연을 용인하였을 것이다. 즉, 쟁점자회사는 유일한 생산전담 거래처이므로, 자금회수 압박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급체인인 모든 거래처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자회사와의 유상사급거래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불가피하고, 쟁점자회사의 부도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 ODM 유상사급 생산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CCC㈜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 ...(중략)... 해외 동일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쟁점 매출채권이 지연회수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상사급 거래 특성상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국내 자회사와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회사와의 매출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서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지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상사급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인정이지 계산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판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지를 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였으나, 국조법 제8조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여야 하고(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업체들 중 CCC(주)와 DDD을 제외하면 모든 OOO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CCC(주)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DDD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제품 매입처가 쟁점 자회사가 유일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의 회수 및 지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3 관세

###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인상 (Section 301)

#### 1.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인상

##### (1) 개요

지난 5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중국산 전기차 등을 비롯한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180억 달러(약 24조 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복관세는 미국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하여 작성된 리스트에 열거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 (2) 대상

금번 발표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정된 산업별 품목과 예정 세율 및 인상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별 구분	부과예정 세율 및 시기
배터리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 外)	25% on August 1, 2024

전기차	100% on August 1, 2024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用)	25% on August 1, 2024
인공호흡기 및 안면 마스크	25% on August 1, 2024
주사기 및 바늘	50% on August 1, 2024
갠트리 트레인(Ship-to-shore)	25% on August 1, 2024
태양전지	50% on August 1, 2024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on August 1, 2024
핵심광물	25% on January 1, 2024
반도체	50% on January 1, 2025
리튬이온 배터리(전기차 外)	25% on January 1, 2026
의료용 수술장갑	25% on January 1, 2026
영구자석	25% on January 1, 2026
천연 흑연	25% on January 1, 2026

## 2. 보복관세의 부과 기준 관련 동향

### (1) 보복관세의 부과 기준

Section 301에 따른 보복관세의 부과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19 CFR 134)"을 근거로 합니다.

####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제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그 원산지로 함.

미국 관세청(CBP)에서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형을 중심으로 각 사안 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HS Code의 변화,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2) 관련 동향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투입 자재의 생산국가 또는 중요한 제조공정이 진행된 국가 등이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조에 중요한 공정이 중국 외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조립국으로 결정되어 보복관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USTR은 지난 5월 22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자동차와 같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과 관련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3) 판정사례 (CBP Ruling)

Ref #	원산지 외 국가 수행공정	원산지
H303529 (2019)	주요 조립체 중 하나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말레이시아 생산 조립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중국에서 제작, 최종 조립이 중국에서 수행	중국
H30386 (2020)	멕시코 외 국가에서 부품조달 (50%) 이후 멕시코산 부품과 조립 및 최종 제품 생산 (납땜, 용합, 사출성형 등)	멕시코
H302821 (2019)	고전압 케이בל과 휠을 유럽에서 조달, 주요 조립체 5개는 중국에서 조달, 스웨덴에서 승용차로 조립됨	중국
H301619 (2018)	중국산 부품(고정자, 후면하우징, 회전자 등)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단순조립공정을 거쳐 전기모터로 조립됨	중국
H303864 (2019)	중국산 부품(임펠러, 실, 플라스틱 하우징)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단순조립공정을 거쳐 전기모터로 조립됨	중국
N126155 (2010)	보트의 추진 어셈블리는 스웨덴 및 독일에서 부품으로 조립되었으며, 제품조립에 소요된 시간은 총 1 시간임. 부품은 먼저 스웨덴에서 페인팅, 건조, 세척된 뒤 조립과정을 거치며 스웨덴에서 조립되는 구성요소가 쟁점물품 내 부품들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중요한 구성요소 임.	스웨덴
H312790 (2021)	A 국에서 수행된 작업: 주물, 로드, 피스톤, 플레이트, 개스킷 등을 조립하여 크랭크 샤프트, 피스톤 로드 어셈블리,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등으로 각각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파워헤드 어셈블리로 생산됨. 해당 프로세스는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1 시간 소요. 이후 만들어진 어셈블리는 다른 어셈블리와 함께 중국에서 조립됨. 파워헤드 엔진의 몸체는 중국산임. 단, 엔진 어셈블리의 핵심부품인 엔진블록이 중국 외 국가에서 공급된다면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중국
H270580 (2016)	거의 모든 부품이 중국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성 요소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용접물과 용접 이음매를 생산.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됨.	미국
H319601 (2021)	자동차 에어컨의 증발기 (코일 어셈블리, 임펠러, 직류모터) 시나리오 1. 코어제조(베트남)-조립(중국)-최종조립(멕시코) *멕시코에서 조립 시 용접, 압착 등의 공정이 포함됨 시나리오 2. 코어제조(베트남)-조립(중국)-최종조립(중국)	s1 - 베트남 s2 - 중국

#### [KPMG 의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적용 대상 품목 중 일부는 예외조항을 적용 받아 고율관세의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의 적용기간 연장여부 결정이 5월 말에 예정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향후 미국에서 보복관세의 부과대상의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엄격해지고 관련 원산지 검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산 자재를 투입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